

의안번호	2220285
의 퇴 인	최은석의원
회 답 일	2026.9.23.
추 계 번호	26F387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일몰연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2조제1항 (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)	○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4 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6.12.31. → 2030.12.31.
2	안 제121조의34제1항 (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	○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6.12.31. → 2030.12.31.
3	안 제121조의35제1항 (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－ (적용기한) 2026.12.31. → 2030.12.31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2조제1항 (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1조의34제1항 (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	
3	안 제121조의35제1항 (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 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
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, 기회발전특구집합

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(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) 공공기관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해당 양도차익의 일정 금액을 양도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
- (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
- (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)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9%의 분리과세율을 적용

□ 각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혁신도시·세종시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와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,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규모 및 이자·배당소득 발생 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

-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,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근 3년간 조세지출 실적이 모두 0억원임

□ 그러나 향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,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 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지원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839	jwpark1209@assembly.go.kr